

의안번호	제 435 호
의 결 연 월 일	년 월 일 (제 회)

충청북도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 출 자	충 청 북 도 지 사
제출연월일	2016년 8월 19일

법무통계담당관 심사를 마칩

충청북도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435

제출연월일 : 2016년 8월 19일

제출자 : 충청북도지사

1. 제안사유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사항 반영
-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조항을 현실에 맞게 조정

2. 주요내용

- 위원장을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 (안 제2조제2항)
 - (현행) 충청북도재무관
 - (개정)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
- 위원장이었던 충청북도재무관을 위원으로 변경(안 제2조제2항)
- 협회 등 단체 또는 관련 학회에서 추천하는 위원 제외(안 제2조제2항)

3. 의안전문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관계법령 발췌 : 붙임

6. 비용추계서 : 해당없음

충청북도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충청북도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를 “충청북도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 대상 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충청북도재무관으로 하고”를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고”로, “해당하는 자”를 “해당하는 사람”으로, “위촉한 자”를 “임명하거나 위촉한 사람으로”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있는 자”를 “있는 사람”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자격이 있는 자로서”를,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로 하고, “풍부한 자”를 “풍부한 사람”으로 하며, 같은 항 제5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공무원으로서”를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으로서”로, “있는 자”를 “있는 사람”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 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충청북도재무관

제3조제2항 본문 중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을 “위촉위원”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한다.

제6조제3항 본문 중 “충청북도재무관”을 “위원회 위원장”으로, “계약심의위원회 위원”을 “위원회 위원”으로 한다.

제11조 본문 중 “계약심의위원회 위원장”을 “충청북도재무관”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u>충청북도계약심의위원회</u> 구성·운영 및 <u>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u> 범위 등에 관한 조례</p> <p>제2조(계약심의위원회) ① (생략)</p> <p>② 위원장은 <u>충청북도재무관</u>으로 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u>해당하는 자</u> 중에서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u>위촉한 자</u>로 한다.</p> <p>1.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관련분야의 교수(부교수·조교수를 포함한다)로 재직중에 <u>있는 자</u></p> <p>2. 변호사의 <u>자격이 있는 자</u>로서 관련분야에 대한 경험과 지식이 <u>풍부한 자</u></p> <p>3.~4. (생략)</p> <p>5. <u>관련법령에 따라 주무관청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협회 또는 관련 학회에서 추천하는 자</u></p> <p>6. 국가기관 및 다른 지방자치</p>	<p><u>충청북도 계약심의위원회</u> 구성·운영 및 <u>주민참여감독 대상 공사</u> 범위 등에 관한 조례</p> <p>제2조(계약심의위원회) ① (현행과 같음)</p> <p>② ----- <u>민간위원 중에서 호</u> <u>선하고</u> ----- ----- <u>해당하는 사람</u> ----- ----- ----- <u>임명하거나 위촉한 사람으</u> <u>로</u> -----.</p> <p>1. ----- ----- ----- ----- <u>있는 사람</u></p> <p>2. ----- <u>자격이 있는 사람으</u> <u>로서</u> ----- ----- <u>풍부한 사람</u></p> <p>3.~4. (현행과 같음)</p> <p><u><삭 제></u></p> <p>6. -----</p>

단체의 공무원으로서 해당분야의 계약·기술 등에 대한 경험과 지식이 있는 자

<신 설>

제3조(임무 및 임기) ① (생략)

②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6조(소위원회) ①·② (생략)

③ 소위원회 위원장은 충청북도 재무관이 되며, 소위원회 위원은 심의내용과 특성을 고려하여 계약심의위원회 위원 중 해당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자를 위원장이 선임하되 5명 이상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제11조(수당 등) 위원장에 참석하는 위원에 대하여는 「충청북도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

-----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으로서 -----
----- 있는 사람 -----

7. 충청북도재무관

제3조(임무 및 임기) ① (현행과 같음)

② 위촉위원-----

----- . <단서 삭제>

제6조(소위원회)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위원회 위원장-----

위원회 위원 -----

----- .

제11조(수당 등) -----

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계약심의위원회 위원장 및 계약담당자, 관계공무원이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충청북도재무관 -----

-----.

관련법령 발췌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2조(계약심의위원회의 설치·운영)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의 적절성과 적법성을 심의하기 위하여 계약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계약과 관련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입찰에서 입찰참가자의 자격 제한에 관한 사항

나. 계약체결 방법에 관한 사항

다. 낙찰자 결정방법에 관한 사항

2.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관한 사항

3. 제31조의2제1항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 및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으로 부터 계약사무를 위탁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과하려는 과징금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계약심의위원회는 그 심의 결과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제1항 제3호의 경우 그 심의를 요청한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심의 결과를 입찰 및 계약체결,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과징금 부과 등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6조(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32조에 따른 계약심의위원회는 시·도에 설치하는 시·도계약심의위원회(이하 “시·도위원회”라 한다)와 시·군·구에 설치하는 시·군·구계약심의위원회(이하 “시·군·구위원회”라 한다)로 구분한다.

② 계약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1.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에서 관련 분야의 교수(부교수·조교수를 포함한다)로 재직 중인 사람

2.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관련 분야에 대한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사람

3.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가 추천하는 사람으로서 회계 및 조달계약 업무에 관한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사람

4.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해당 분야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해당 분야의 기술자격 취득자

5. 삭제

6. 국가기관과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으로서 해당 분야의 계약·기술 등에 대한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사람

7. 「지방재정법」 제91조에 따른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재무관 또는 분임재무관

③ 시·도지사는 시·군·구위원회의 구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제2항 각 호의 자격을 갖춘 사람의 현황을 작성하여 시·군·구에 제공할 수 있다.

④ 계약심의위원회 위원 중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106조의2(계약심의위원회 위원의 해촉)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06조제2항 제1호부터 제4호 및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107조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제92조의7제1항 각 호(제4호는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07조(계약심의위원회의 운영) ① 계약심의위원회는 계약심의위원회의 효율적인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사·용역·물품 등 분야별로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그 소위원회에서 심의하게 할 수 있다.

②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계약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되며, 소위원회의 위원은 계약심의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해당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사람을 계약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은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④ 계약심의위원회(소위원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⑤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에 대해서는 제92조의7(제1항제4호는 제외한다)을 준용한다. 이 경우 “사건”을 “안건”으로, “부정당업자”를 “심의 관련자”로 본다.

⑥ 삭제 <2016.1.15.>

제108조(계약심의위원회 심의대상) ① 법 제3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계약“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계약을 말한다. 다만, 긴급한 재해복구사업,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을 조기 집행할 필요가 있는 사업은 제외한다.

1. 시·도위원회: 해당 시·도에서 발주하는 추정가격이 70억원 이상인 공사 계약 (물품·용역 등의 경우에는 20억원 이상)
2. 시·군·구위원회: 해당 시·군·구에서 발주하는 추정가격이 50억원 이상인 공사 계약(물품·용역 등의 경우에는 10억원 이상)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32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관한 사항은 계약의 규모와 관계없이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109조(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